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

영재 업무의 실제 Ⅲ
(영재교육원 담당교사
/장학사)



기획 이재분, 이미경, 강병직, 박지은, 이정희(한국교육개발원)

집필 송인섭(숙명여자대학교)
이신동(순천향대학교)
김윤수(경기도과학교육원)
서재경(서울언주중학교)
이인호(인천과학고등학교)
윤부섭(경기가평교육지원청)
황광일(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자문 및 검토 오성배(교육과학기술부)
김영산(서울특별시교육청), 곽혜주(부산광역시교육청)
정덕영(대구광역시교육청), 조용구(인천광역시교육청)
고준상(광주광역시교육청), 박미혜(대전광역시교육청)
임기복(울산광역시교육청), 김성미(경기도교육청)
방대식(강원도교육청), 이기태(충청북도교육청)
박대규(충청남도교육청), 박성배(전라북도교육청)
천조현(전라남도교육청), 천종복(경상북도교육청)
정영현(경상남도교육청), 고용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영주(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김호진(서울염창중학교)
이경학(광주일곡초등학교)
전난영(아산신광초등학교)
최해순(경기수원교육지원청)

이 자료는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위탁과제로 수입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여는글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을 기존의 시험 위주의 선발에서 교사의 관찰 및 추천을 중심으로 한 교사 관찰·추천제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09. 6. 3). 이에 따라 교사 관찰·추천제는 2010년 시범 적용기간을 통해 시행된 바 있으며,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재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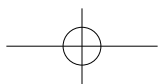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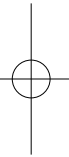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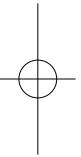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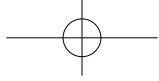
교사 관찰·추천제는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타고난 영재성 및 잠재 가능성을 지닌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은 물론이며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도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작한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교사·관리자 안내자료)는 교사 관찰·추천제의 추진 배경, 선발과정, 선발기준, 교사·관리자들의 실제업무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책자가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교사 관리자분들께 널리 활용되어 교사 관찰·추천제가 영재교육 현장에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12. 1.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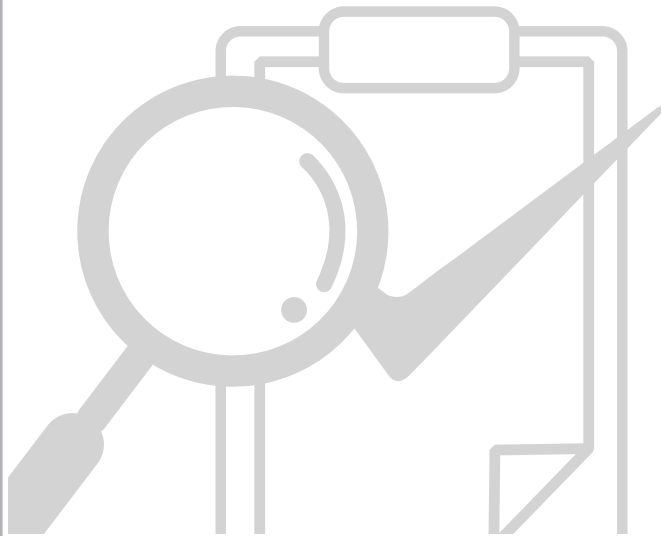


목 차

Part. 1 업무의 실제 7

Part. 2 참고자료 23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art. 1

업무의 실제

| Part. 1 업무의 실제 |

업무흐름도

1단계 :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담당자 : 시·도교육청

할 일 : 시·도별 영재교육 진흥위원회의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시 기 : 전년도 10~11월



2단계 : 지역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협의

담당자 : 지역교육청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지역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 협의회 지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확정

시 기 : 1~2월



3단계 : 지역 내 영재교육업무 담당자 연수 또는 워크숍

담당자 : 지역교육청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지역 내 영재교육업무 담당자 교사 관찰·추천제 관련 연수 또는 워크숍

시 기 : 1~2월



4단계 : 영재교육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시 기 : 3~4월



5단계 : 영재교육기관별 선발 계획 수립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관찰·추천 선발 계획 수립

시 기 : 3~4월



6단계 : 선발공고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관찰·추천 선발 공고
시 기 : 3~4월



7단계 : 학생 / 학부모 홍보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 담임교사
할 일 : 관찰·추천 선발 방법 학생 및 학부모 안내
시 기 : 5월



8단계 : 학교별 후보자 명단 취합

담당자 : 학교별 영재교육업무 담당교사
할 일 : 학교별 영재교육대상자 후보 추천
시 기 : 11월



9단계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담당자 : 선정심사위원
할 일 : 추천자 검증 / 선발기준 및 반영 비율 확정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기 : 12월~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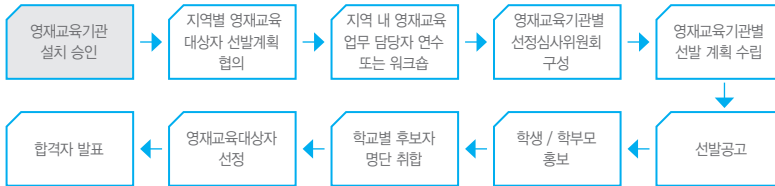


10단계 : 합격자 발표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선정심사위원회
할 일 : 최종 영재교육대상자 공지 / 오리엔테이션 실시
시 기 : 12~1월

| Part. 1 업무의 실제 |

단계별 세부업무: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정



1) 1단계 :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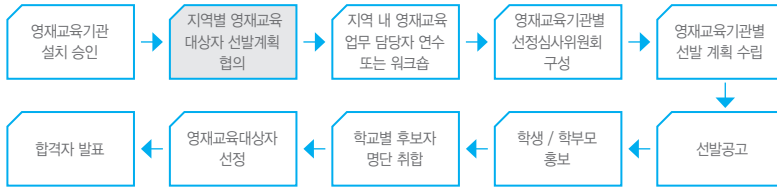
담당자 : 시·도교육청

할 일 : 시·도별 영재교육 진흥위원회의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시 기 : 전년도 10~11월

영재교육기관은 시·도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에서 영재교육기관 설치승인이 되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한다.¹⁾

[1] <참고자료 1>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



2) 2단계 : 지역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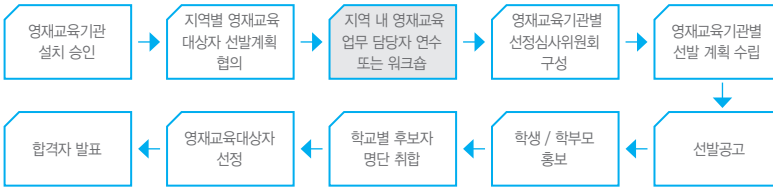
담당자 : 지역교육청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지역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 협의회 지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확정

시기 : 1~2월

- ① 관찰·추천 선발과정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장학사, 영재교육기관 담당자는 해당지역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선발에 관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②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담당교사는 각 영재교육기관으로 돌아가, 각 기관별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영재기관 학칙 및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업무를 진행한다.
- ③ 한 지역 내에서 영재기관별 관찰·추천 선발의 세부 평가내용이나 절차가 다를 경우 일반학교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재기관별 담당자 협의 등을 통하여 선발과정, 절차, 내용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Part. 1 업무의 실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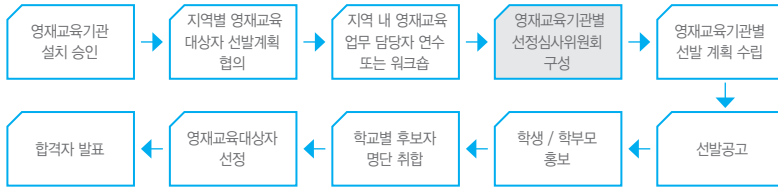
3) 3단계 : 지역 내 영재교육업무 담당자 연수 또는 워크숍

담당자 : 지역교육청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지역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 협의회 / 지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확정

시 기 : 1~2월

- ① 학교별 영재교육업무 담당교사 및 영재교육 지도강사 등 관찰·추천 선발업무에 관련된 지역 내 장학사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 학교별 관찰·추천 선발업무를 담당하게 될 교사는 학교추천위원회 조직, 학교추천자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담임(교과)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업무 안내가 필요하다.
- ② 이외에도 연수 또는 워크숍을 통해 학교별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평가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선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업무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4) 4단계 : 영재교육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시 기 : 3~4월

- ① 법적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②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영재교육전문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선정심사위원회의 시기별 역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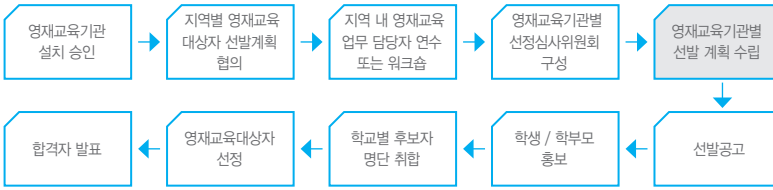
| 3~4월 | 4월 | 11월 | 12월 | 1월 |
|------------|-------------|--------------------|------------------|--------------------|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관찰·추천 계획 심의 | 영재교육 무시험 전형 대상자 선정 | 관찰·추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최종 영재교육대상자 심의 및 선정 |

Tip

영재교육기관 설치 학교에서는 학교추천위원회를 겸함

²⁾ <참고자료 2> 선정심사위원회 법적 근거

| Part. 1 업무의 실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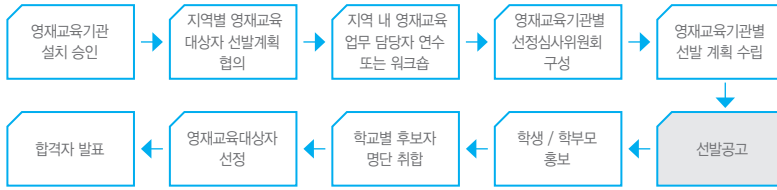
5) 5단계 : 영재교육기관별 선발 계획 수립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 관찰·추천 선발 계획 수립
 시 기 : 3~4월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계획수립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2. 선발일정
3. 지원자격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영재교육기관 재원중인 학생(연계성 교육 대상자)을 선발하는 경우 등.
4. 신청방법 및 기간
5. 제출서류
6. 선발요강 및 응시원서 교부
7. 전형순서
8. 선발방법 : 평가도구, 방법, 반영비율³⁾ 등
9. 전형별 평가대상 인원
 - 학급→학교→영재기관 의 각각의 단계별 배정인원 또는 비율 등
10. 전형별 평가담당
 - 학급 : 담임(교과)교사
 - 학교 : 학교추천위원회
 - 영재기관 : 선정심사위원회
11. 합격증 교부 및 합격등록
12. 입학식
13. 관찰평가 담당자 협의회 일정 등

[3] <참고자료 3> 교사관찰·추천 선발준거 및 반영비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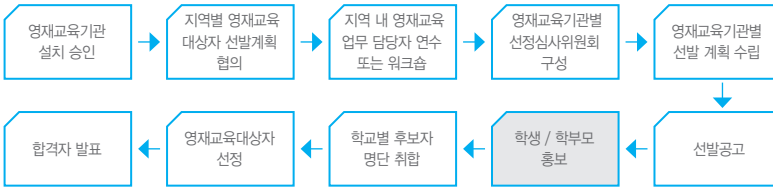
6) 6단계 : 선발공고

담당자: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할 일: 관찰 · 추천 선발공고
 시기: 3~4월

선발계획이 수립되면 영재교육기관의 지원대상 학교에 공문으로 선발계획을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계획을 공고⁴⁾한다. 선발계획 공고는 접수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실시해야 한다.

4) <참고자료 4> 선발공고 예시

| Part. 1 업무의 실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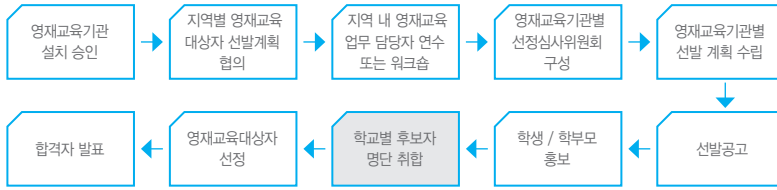
7) 7단계 : 학생 / 학부모 홍보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 / 담임교사

할 일 : 관찰·추천 선발 방법 학생 및 학부모 안내

시 기 : 5월

- ① 관찰·추천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학생관찰을 전제로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평가를 하게 될 학생들은 학년 초에 희망 또는 추천을 통하여 관찰평가 희망의사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학생들의 희망의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관찰·추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학생 및 학부모가 관찰·추천제의 절차,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학교 및 학급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안내를 해야 한다.
- ③ 관찰평가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 또는 학부모 중 평가의 의미나 절차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영재교육업무 담당교사는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하여 관찰·추천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④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관찰·추천평가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실시된 후 장기간의 관찰평가를 실시할 학생을 정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교사가 추천하는 경우 등을 통하여 희망원을 제출받고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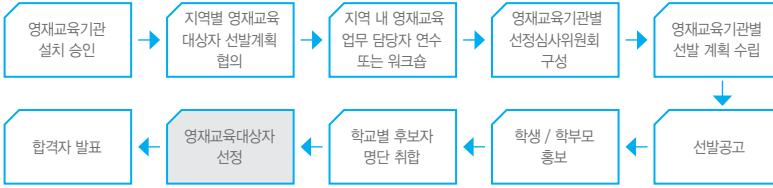
8) 8단계 : 학교별 후보자 명단 취합

담당자 : 학교별 영재교육업무 담당교사
 할 일 : 학교별 영재교육대상자 후보 추천
 시 기 : 11월

학교별 배정인원에 따른 후보자를 해당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며,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제출된 후보자 명단⁵⁾을 취합한다.

⁵⁾ <참고자료 5> 학교별 후보자 명단 양식 예시

| Part. 1 업무의 실제 |



9) 9단계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담당자 : 선정심사위원회
 할 일 : 추천자 검증 / 선발기준 및 반영 비율 확정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기 : 12월 ~ 1월

① 추천자 검증(수집된 자료 검토)

학년 초 수립한 관찰·추천 선발 계획안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기관별 관찰·추천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잠재적 영재군을 대상으로 선발 기준안을 수립 한다.

② 선발기준 및 반영 비율

교사 관찰 자료(체크리스트)외에 영재성 자료나 창의탐구 문제해결력, 면접 등 별도 평가를 추가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항목⁶⁾을 정하고 항목별 반영 비율을 정한다.

Tip

평가준거 외에도 각종 과학대회 실적, 수학, 과학 과목의 국가수준성취도 평가 결과(국가수준성취도 평가 미실시 학년은 수학, 과학 성적 등) 등을 영재교육기관별 특성에 따라 평가준거에 포함 또는 동점자 처리규정에 포함할 수 있음.

6) <참고자료 6> 관찰·추천 선발항목 예시

③ 수집된 자료 검토 방법

가. 교사 관찰자료

잠재적 영재군을 대상으로 한 교사 관찰자료는 체크리스트, 사례 서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의 영재성을 관찰하여 추천할 수 있다. 교사 관찰은 1, 2회의 관찰이 아닌 장기간의 관찰과 여러 명의 교사가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통한 추천을 하도록 한다.

나. 영재성 평가

사교육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예방하고 잠재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행결과물로 평가한다.

다. 창의탐구 문제해결력 수행평가

창의탐구 문제해결력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알고 있는 지식, 원리, 문제해결 방법을 새롭게 재조직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창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간단한 창의탐구 문제해결력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재성을 평가할 수 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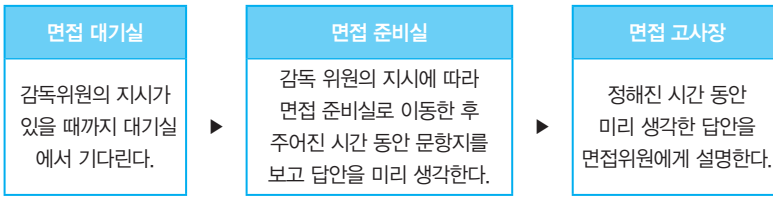
-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배제한 과제로 제시한다.
- 특정 학생 및 특정 성별에 유리한 문제는 배제한다.
-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을 예상하여 채점 기준안을 만든다.

| Part. 1 업무의 실제 |

④ 면접

면접은 면접관이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역동적이고 다면적으로 학생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영재선발방법 중 하나이다. 심층면접은 영재행동 특성검사, 포트폴리오평가, 수행평가, 창의적인성 검사 등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존에 수집된 정보로 확인된 학생의 특성을 재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며, 학생들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심층 면접의 한 방법으로 질문지 등을 활용한 지시적 면접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지시적 면접방식은 학생이 면접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 면접 준비실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문항지를 미리 보고 답안을 생각한 후 면접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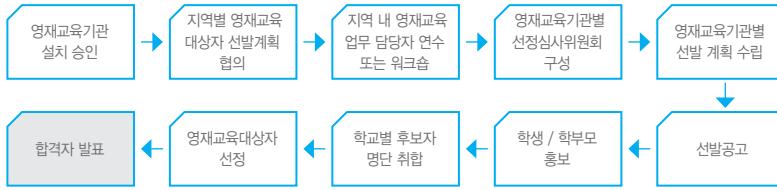


• 순위자 명부

영재교육기관 승인 결과 배정된 인원수에 맞게 최종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영재교육기관 개강까지 포기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를 포함하여 1.2 배수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순위 명부 예시

| 순 | 학 교 명 | 성명 | 교사 관찰 | | | | | 영 재 성 | 창의 탐구 | 면접 | 계 | 비고 | |
|----|-------------|----|-------|----|----------|----|---------|-------------|----------|----|----|----|---------|
| | | | 교과적성 | | 수업 태도 | 인성 | 리더 십 | | | | | | 창의 성 |
| | | | 수학 | 과학 | | | | | | | | | |
| 1 | | | | | | | | | | | 선정 | | |
| 2 | | | | | | | | | | | 선정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후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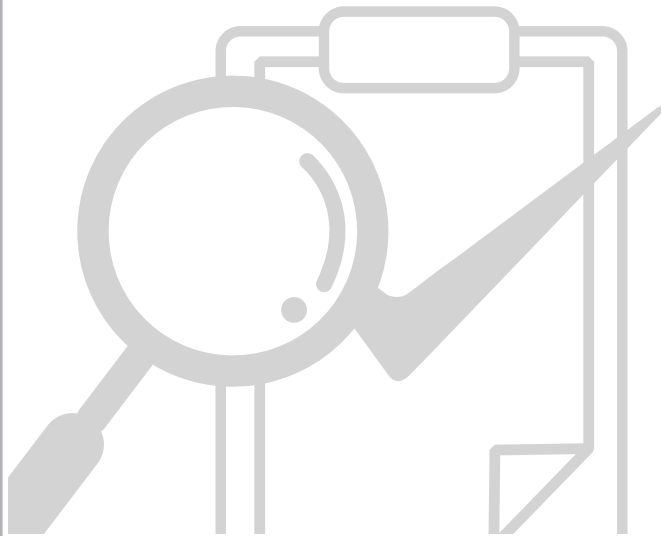


10) 10단계 : 합격자 발표

담당자 : 영재교육기관 담당자/선정심사위원회
 할 일 : 최종 영재교육대상자 공지 / 오리엔테이션 실시
 시 기 : 12~1월

- 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를 추천한 기관에 통보하고, 개인에게 합격통지서를 배부한다.
- ② 오리엔테이션 및 개강식 등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이후 일정을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art. 2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

〈참고자료 2〉 선정심사위원회 법적 근거

〈참고자료 3〉 교사관찰추천 선발준거 및
반영비율 예시

〈참고자료 4〉 선발공고 예시

〈참고자료 5〉 학교별 후보자 명단 양식 예시

〈참고자료 6〉 관찰·추천 선발항목 예시

참고자료 1.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

진흥위원회에서는 지역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 1)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 6)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3(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1]

제10조의2 (시·도위원회의 간사)

- ①시·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시·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참고자료 2. 선정심사위원회 법적 근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6.12.2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7조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06.12.21>)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 Part. 2 참고자료 |

참고자료 3. 교사관찰 · 추천 선발준거 및 반영비율 예시

▶ 교사관찰 · 추천 시 활용 가능한 선발준거(서류심사 및 검사실시)

| 구분 | 선발준거 | 개별추천인 추천 | 학교추천위원회 | 영재교육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
| 서류 심사 | 영재행동특성 체크리스트 | ○ | ○(평균) | ○ |
| | 리더십특성 검사 | ○ | ○(평균) | ○ |
| | 흥미 검사 | ○ | ○ | ○ |
| | 창의적인성 검사 | ○ | ○(평균) | ○ |
| | 학부모행동 체크리스트 | 선택 | 선택 | |
| | 학생자기 보고서 | 선택 | ○ | |
| | 학부모 지원서 | 선택 | ○ | |
| | 학업성취도 | ○ | ○ | |
| | 수상 실적 | ○ | ○ | |
| | 학교장 / 교사추천서 | | ○ (개별추천인추천서) | ○ (학교장 추천서) |
| | 기타인 추천서 | ○ | ○ | ○ |
| | 기타 서류 | ○ | ○ | ○ |
| 검사 실시 | 영재성 검사 | | | ○ |
| | 학문적성 검사 | | | ○ |

※ 선발계획(반영비율) 예시 1 : 2012 00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전형 방법 | 평가 항목 | 반영 비율 |
|------------|-------------------------|-------|
| 학생지원 | KEDI 창의적인성 검사 | 5% |
| | KEDI 리더십특성 검사 | 5% |
| | KEDI-Renzulli 흥미 검사 | 5% |
| 학부모 지원 | KEDI-Gerric 학부모 체크리스트 | 5% |
| 개별추천인추천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검사지 | 5% |
| 학교추천위원회 | 검사지와 면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추천 | 5%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상황중심 관찰 · 추천 심사 | 60% |
| | 포트폴리오 및 대면 심사 | 10% |
| 합계 | | 100 |

※ 선발계획(반영비율) 예시 2 : 2012 00교육지원청

| 구분 | 영역 | 관찰·추천 점수 | 영재성 검사 | 면접 | 학문 적성 검사 | 계 | 선발 인원 | 비고 |
|-----|----|----------|--------|-----|----------|------|-----------------|----------------|
| 2단계 | | 70% | 30% | · | · | 100% | 학교 학년 정원 10% 이내 | 단위 학교 |
| 3단계 | 1차 | 70% | 30% | · | · | 100% | 정원의 300% | 00교육 지원청 영재교육원 |
| | 2차 | 40% | 30% | · | 30% | 100% | 정원의 150% | |
| | 3차 | 20% | 30% | 20% | 30% | 100% | 정원의 100% | |

※ 선발계획 예시 3 : 2013 00교육지원청 선발계획

| 단계 | 일시 | 전형 장소 | 방법 | 비고 |
|--------|--|---------|----------------|---|
| 공고 | '12.10.21(목) | | • 공문 • 홈페이지 | • 접수일 전까지 공고기간 1개월 확보 |
| 1차 전형 | '12.11.23(화) ~11.25(목) | 00교육지원청 | • 서류전형 | • 학교별 자체 추천에 의한 추천 서류 접수 (학교별 일괄 접수) |
| 2차 전형 | '12.12.10(금) 15:00~16:30 (90분) 미술분야 15:00 ~ 18:00 | 00초등학교 | • 영재성검사 | • 2차 전형 결과 발표 : 12. 16(목) 14:00 • 지역교육청홈페이지에 명단을 탑재함 • 선발 정원의 2배수 선발, 합격자는 3차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
| 3차 전형 | '12.12.18(토) 14:00~ | 00초등학교 | • 면접 | • 응시대상자 : 2차 전형 합격자 • 면접(14:00~) |
| 합격자 발표 | '12.12.30(목) 14:00 | | • 공문 • 홈페이지 | • 2차 영재성 검사 100% , 면접 (적격여부) 최종 선발 • 지역교육청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2차 전형 점수, 면접(영재교육원 내부 규정) |

참고자료 4. 선발공고 예시

2013 00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1. 선발 분야 및 선발 인원

| 선발 분야 | 초등 | 중등 | 계 | 비고 |
|-------|-----------|-----------|-----|---------------------|
| | 통합(수학·과학) | 통합(수학·과학) | | |
| 선발 인원 | 40명 | 20명 | 60명 | 초등은 00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

2. 지원 자격

- 가. 대상 학년(2012학년도 기준)
- 초등학교 통합 영재교육대상자 :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 중학교 통합 영재교육대상자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
- 나. 학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전형 응시대상자(재적생의 5%내)

3. 지원 방법

|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 비고 |
|-------|-----------|-----------------------|-------------------|
| 학생 | 학생 자기보고서 | 2012.11.12~2012.11.19 | ※ 학생 자기보고서 출력물 작성 |
| 개별추천인 | 개별추천인 추천서 | 2012.11.19~2012.11.27 | ※ 교사추천선발 시스템 활용 |

4. 전형 일정 및 선발 방법

| 단계 | 추진 내용 | | 추진 일정 | |
|---------------|--|--------|-----------------------|------------------------|
|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 학생 자기보고서 | | 2012.11.12~2012.11.19 | |
| 선발 | 1단계 | 교사 관찰 | 학교추천위원회 | 2012.11.19~2012.11.27 |
| | 2단계 | 영재성 검사 | 한국교육개발원 | 2012.12.10 15:00~16:30 |
| | 3단계 | 개별 면접 | 선정심사위원회 | 2012.12.16 13:00~17:00 |
|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선정 | 제1단계 추천자를 대상으로, 제2단계 영재성검사(40%) 및 제3단계 심층면접(60%)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 | 2012.12.21 10:00 | |

※ 문의처

00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33) 332~2611, FAX (033) 334~2618
00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wpce.go.kr>

※ 자세한 내용은 00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요강 참조

참고자료 5. 학교별 후보자 명단 양식 예시

2013학년도 영재선발대상자 접수현황(초4)

| 접수번호 | 학교명 | 학년반 | 학생명 | 성별 | 생년월일 | 지원학년 | 연락처 | 전형유형 |
|-------|-----|-------------|-----|----|------------|------|---------------|------|
| 11401 | 00초 | 4-1 | 박00 | 여 | 2001-01-00 | 5 | 010-5286-**** | 일반 |
| 11402 | 11초 | 4-1 | 윤00 | 남 | 2011-11-00 | 5 | 010-3778-**** | 일반 |
| 11403 | 22초 | 4-1 | 정00 | 남 | 2000-10-00 | 5 | 010-5020-**** | 일반 |
| 11404 | 33초 | 4-1 | 송00 | 남 | 2000-04-00 | 5 | 010-2533-**** | 일반 |
| 11405 | 44초 | 4-1 | 이00 | 남 | 2000-12-00 | 5 | 010-2533-**** | 일반 |
| 11406 | 55초 | 4-1 | 이00 | 여 | 2000-10-00 | 5 | 010-8980-**** | 일반 |
| 11407 | 66초 | 4-1 | 신00 | 여 | 2001-01-00 | 5 | 010-5388-**** | 일반 |
| 11408 | 77초 | 4-2 | 이00 | 남 | 2000-07-00 | 5 | 010-9175-**** | 일반 |
| 11409 | 88초 | 4학년민 들레반 | 장00 | 여 | 2000-11-00 | 5 | 010-8756-**** | 특별 |
| 11410 | 99초 | 4학년민 들레반 | 황00 | 여 | 2000-09-00 | 5 | 010-9209-**** | 특별 |

학교별 후보자 배정현황

| 순 | 학교명 | 배정인원 (일반) | 신청인원 (특별전형) | 접수인원 (일반) | 접수인원 (특별전형) |
|---|-----|--------------|----------------|--------------|----------------|
| 1 | 00초 | 10 | 3 | 10 | 3 |
| 2 | 00초 | 2 | 0 | 2 | 0 |
| 3 | 00초 | 1 | 0 | 1 | 0 |
| 4 | 00초 | 2 | 0 | 2 | 0 |
| 5 | 00초 | 1 | 0 | 1 | 0 |

* 특별전형 : 영재교육기관 재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1차 전형 면제등으로 선발하는 경우

| Part. 2 참고자료 |

참고자료 6. 관찰·추천 선발항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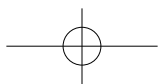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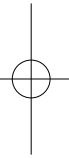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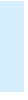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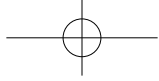
※ 관찰·추천 선발항목 예시 1

| 관찰·추천자료(100%) | | | | | | | | 합계 |
|---------------|-------|----|-----|-----|-----------|------------|---------------------------|-----|
| 자기소개서 | 체크리스트 | | | | 교사 추천서 | 학부모 추천서 | 기타 (포트폴리오, 생활기록부 등) | |
| | 학업 | 인성 | 리더십 | 창의성 | | | | |
| 10 | 10 | 10 | 10 | 10 | 20 | 10 | 20 | 100 |

※ 관찰·추천 선발항목 예시 2

| 관찰·추천자료(70%) | | | | | | | | 창의 탐구 해결 | 면접 | 합계 |
|--------------|-------|----|-----|-----|-----|-----|----|----------------|----|-----|
| 자기소개서 | 체크리스트 | | | | 추천서 | | 기타 | | | |
| | 학업 | 인성 | 리더십 | 창의성 | 교사 | 학부모 | | | | |
| 10 | 10 | 10 | 10 | 10 | 5 | 5 | 10 | 10 | 20 | 100 |

※ 위 항목별 비율은 예시안으로 기관별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



연구자료 CRM 2012-14-7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 · 추천제 바로알기

- 교사 · 관리자 안내자료 -

| | | |
|-----|-----|---|
| 발행 | 행 | 2012년 2월 |
| 발행인 | 인 | 김 태 완 |
| 발행처 | 처 | 한국교육개발원 |
| 주소 | 소 | 서울 서초구 바우뒀길 220-1 |
| 전화 | 화 | (02) 3460-0114 |
| 팩스 | 스 | (02) 3460-0148 |
| | | http://www.kedi.re.kr |
| 등록 | 록 |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
| 인쇄 | 쇄 처 | (주)현대아트컴 (02) 2266-4482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